

[별표 4] <신설 2006.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관련)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생명보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험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보험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으로 한다)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등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등	교육인적자원부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등	여성가족부

4. 제21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노동부	
5. 제216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여신전문금융업 협회	